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전면개정(2002. 2. 4, 법률 제6653호)됨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방법을 합성수지재질외의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으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포장재질 중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할 제품의 종류를 정함(안 제5조제3항)

다.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 준수 대상제품에 대한 연차별 줄이기 목표를 정함(안 제6조제1항 및 별표2)

라.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검사 전문기관에 한국자원재생공사,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 등을 추가함(안 제7조)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등이 지켜야 할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종합제품”이라 함은 1회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다만, 1회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에 판매제품이외의 샘플 등을 넣어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2.“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재질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

①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제조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포장재의 재질기준)

①제조자등은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3. 동물유 및 식물유



4. 화공약품 및 농약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③제조자등은 다음 각호의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계란·매추리알·도시락

2. 음식료품류·화장품류·세제류·잡화류·종합제품

④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발포폴리스틸렌제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①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제조자등은 별표 2의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를 지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에 관한 검사 등)

①법 제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3. (사)환경마크협회

4. (사)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

5. 환경부장관이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표시방법)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표시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제품포장방법 등의 예외)

제조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2.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3.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제10조(포장용기의 재사용)

① 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5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6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7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②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 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공함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제4조제2항관련)

제품의 종류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식품류	가공식품	15%이하	2차이내
	음료	10%이하	1차이내
	주류	10%이하	2차이내
	제과류	20%이하	2차이내
	건강·기호식품	15%이하	2차이내
화장품류	화장품(세제류 포함)	10%이하	2차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이하	2차이내
	문구류	30%이하	2차이내
	신변잡화류(지갑·허리띠)	30%이하	2차이내
의약부외품	의약부외품	20%이하	2차이내
의류	와이셔츠·내의류	10%이하	1차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 포함), 신변잡화류	25%이하	2차이내

비고:

1.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날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날개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과정에서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를 주입하는 경우에 부풀려진 부분에 대하여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하여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횟수에서 제외한다.
3.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이상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하되,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1회이상 포장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종이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각각의 포장공간비율에 10을 더한 값으로 한다.
5. 홍차·녹차 등의 경우와 같이 제품이 포장과 함께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6.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A1005-1996)에 의한다.
7. 판매자는 위 표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충족하는 범위안에서 제품 또는 포장된 제품을 포장·판매할 수 있다.

【별표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제6조제1항관련)

대상제품 및 포장재	목 표 율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이후
1.식품류중 계란의 포장에 사용되는 계란받침(난좌) 또는 팩	60%이상	60%이상	80%이상	80%이상
2.식품류중 과일(사과와 배에 한한다)의 포장에 사용되는 과일받침(난좌)	5%이상	15%이상	15%이상	60%이상
3.식품류중 컵라면제품포장에 사용되는 컵용기	-	10%이상	10%이상	60%이상
4.화장품류(세제류 포함)제품과 잡화류중 완구·인형류의 제품 및 종합제품으로서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 포함)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받침접시류	40%이상	40%이상	60%이상	60%이상
5.별표 1에 규정된 제품(문구류·신변잡화류·의약부외품 및 의류를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포장재(제1호 내지 제4호의 포장재를 제외한다)	-	-	-	60%이상
<p>비고:</p> <p>1.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2001년까지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 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해당 포장재총량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양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양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p> <p>2.제4호의 경우 2001년까지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 연도에 판매된 제품의 종류별로 받침접시류를 사용하지 아니한 품목수 및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받침접시류를 사용한 품목수와 합성수지재질로 된 받침접시류를 사용한 품목중 50퍼센트이상을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품목수를 합한 품목수가 판매된 총품목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제품의 종류는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호식품, 화장품류(세제류를 포함한다), 완구·인형류로 하고, 품목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품명·용량 및 받침접시류에 따라 품목을 구분하며, 내용물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블리스터포장은 받침접시류로 보지 아니한다.</p> <p>3.2002년이후 적용되는 목표율은 당해 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포장재 총량중 합성수지재질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판매된 제품에 사용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사용총량중 회수하여 재활용·처리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p>				



[별표 3]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표시방법 (제8조 관련)

포장공간비율	% (기준 : %)	
포장횟수 및 재질	1차 :	2차 :

비고:

- 1.포장재질은 포장차수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이 달리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질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2.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 및 포장횟수 등에 대하여 제5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명·검사일자 및 검사번호 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 3.위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공간비율·포장재질 및 포장횟수를 표시할 수 있다.

롤 막힘 완전 해결!!

롤(roll)막힘, 오염, 기타 세척에 대해 애로를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바로 click 하십시오.



세척서비스

- Biojet(완벽한 물리적 세척)
- 장착상태로 세척
 - 탈착하여 세척

세정액

- Biojet(화학적 세척)
- 인체에 무해한 무용제 타일
- 수성임크용, 유성임크용, UV임크용

셀 막힘 테스트

- 오염정도를 확인가능
- Ravol (셀 용적측정 장비)

도주 부품

- 브러시 (효과적인 세척)
- 스테인레스 솔 : 세라믹용
 - 구리 솔 : 크롬용
- 휴대용 현미경(100배)

예심상사

전화 : 031-424-4505 팩스 : 031-423-8169

Home page : www.yerim.com e-mail : kjchoi@yerim.com